

2026년도 제1회 환경시설직(촉탁직) 전환채용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제1회 촉탁직(환경시설직) 전환 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화성도시공사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직종 (업무분야)	인원	임기	시험방법	근무예정지
촉탁직	환경시설직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일로부터 1년 ※ 향후 평가에 따라 1년 단위 계약가능 (최대 4년) 	서류전형 건강상태평가 면접전형	화성시 및 인근 지역

1) 환경시설직 : 시설 환경정화 및 기타 사장이 지정하는 업무

2) 1년간 기간제 촉탁직 근로계약 후 근무실적 및 건강상태 평가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단위 계약 가능

※ 촉탁직 전환채용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정년퇴직일 이전 근속기간 및 근로계약은 소멸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 및 4대 보험 등 정산됨. 이후 근속기간, 연차부여, 복지제도 등은 1년 단위의 새로운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적용됨.(적용례: 1개월마다 1개의 연차 발생, 병가 미부여 등)

※ 보수관련

구분	기본연봉	비고
환경시설직	30,321,720원	화성시 생활임금 적용(※ 2026년 화성시 생활임금 시급 : 12,090원)

2 시험방법

가. 1차 전형 : 전환평가

- 채용분야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근무실적평가(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 평가) 진행
- 수시근무실적평가 80점 미만, 및 건강상태 부적격, 필수자격 미소지(증빙서류 미첨부), 자기소개서 불성실작성(동일기호 반복 등) 불합격 처리

나. 2차 전형 : 면접전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평정요소
 - ①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력
 - ④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 각 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 “보통(70점)” 이상인자 선발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미흡” 이하로 평정 시 불합격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50% 및 면접전형 50%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2026. 1. 1.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나. 거주지 : 제한 없음

다. 결격사유 : 화성도시공사 환경시설직관리규정 제14조 준용

공통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5.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7.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 8.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9.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11.«형법»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직장에서 재직 중 직무태만, 소행불량, 상사 명령 불복종,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로 파면, 해임, 직권 면직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사 재직 중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일이 있는 자
----------	---

라. 환경시설직(축타직) 채용 자격요건

구분	필수자격요건
환경시설직	<p>[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6월 30일 화성도시공사 환경시설직으로 정년퇴직 예정인 자 • 일반채용신체검사에서 합격 또는 정상판정을 받은 자(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질환자 또는 유질환자의 경우 정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명시되어야 함 • 즉시 근무 가능자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접수기간 : 2026. 7. 8.(수) 10:00 ~ 2026. 7. 19.(일) 23:59 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채용시스템 접수 ※ 우편, 방문접수 불가

- URL 주소 <https://hu.recruiter.co.kr>

다. 시험일정 : 전형별 합격자 및 시험장소는 별도 통보함

원서접수		2026. 7. 8. 10:00 ~ 2026. 7. 19. 23:59
1차전형(전환평가)	합격자 발표	2026. 7. 22.
2차전형	면접전형	2026. 7. 24.
최종합격자 발표		2026. 8월 중
임용예정		2026. 8월 중 ※ 공사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최대 1년)

라.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인원 서버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자격요건 자격의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에 의하며, **서류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5.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응시원서(사진첨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시 전산기재
2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채용접수 사이트 동의
3	촉탁직 근로자 전환채용 신청서	붙임 양식 참조
4	화성도시공사 재직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건	스캔파일 업로드
5	일반채용신체검사 결과서 - 보건소, 일반병원(채용신체검사 가능기관)에서 검사 후 검사서 제출 - 검사결과 합격판정 또는 정상판정으로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유질환자 또는 의심질환자의 경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야 함 * 검사일자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한함(공고일 이후 검사 결과서 제출 가능)	스캔파일 업로드
6	취업지원 및 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처를 화성도시공사로 명기하여 제출	스캔파일 업로드
7	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65포털 또는 VM6포털 발급 스캔 파일 업로드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별표(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출생년도 및 생년월일은 표기)

6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온라인 접수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가 없으며, 접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부 파기됩니다.

7 가산점 적용사항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 비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가점합격률(30%) 이내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에 각각 5% 또는 10%씩 가산
- 일반응시자와 취업지원 및 취업보호 대상자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각 전형에서 취업지원 및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 합격(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4항)

구분	가산비율	비고
보훈청에서 인정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취업보호대상자	매과목 4할 이상 일 때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만점에 각각5%, 10%씩 가산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실시되는 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사전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 제출처를 화성도시공사로 명시하여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나. 우수자원봉사자 가점

- 자원봉사활동 기간 및 시간에 따라 가산점 차등 부여
(※ 단,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의 가점 부여)

구분	금장	은장	동장	해바라기	기타
자격기준	기간3년이상 및 누적 300시간 이상	기간3년이상 및 누적 200시간 이상	기간3년이상 및 누적 100시간 이상	기간3년이상 및 누적 30시간 이상	이하
배점	5	4	3	2	1

8 기타사항

가. 지원서 또는 증명서 상에 지원자의 출신지, 학교명,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개인정보 삭제가 미처리된 상태로 제출된 경우 블라인드 후 평가진행

나.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합격자 통지 및 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각종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달 응시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 전형 단계별 응시에 대한 별도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아. 각 전형별 안내 및 합격자 발표 등은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www.hu.or.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의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으며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채용시 자격제한,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차.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겸직제한)규정에 따라 화성도시공사 임직원의 겸직은 금지됩니다.
- 카. 채용관련 비리, 부정행위, 소명 등을 위한 채용이의센터를 운영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 (gavin0206@hu.or.kr)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확진자는 시험응시가 제한됩니다.
- 파.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도시공사 인사총무부(031-8012-7771)로 문의 바랍니다.